##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14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조정훈·김소희·김대식

인요한 • 최수진 • 서지영

김용태 · 정성국 · 조경태

이인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설립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의 보유지분이 감소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 • 출연한 기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	· 운영) ①
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	
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	
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	
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들이 출자·출연한 기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